제55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4. 3. 15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4. 3. 15. (금) 16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6명)

- **민간 위원장** (김종석 민간위원장 주재)

- 민간위원 : 곽수근, 권남훈, 박익수, 신혜은, 오균, 오정은, 우태희, 윤명오, 이인호, 이혁우, 정진경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중기부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4-96	행정연	규제영향분석 고도화 방안	보고안건
②	2024-97	국조실	규제샌드박스 ’23년 운영성과 및 ’24년 주요 추진계획	보고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규제영향분석 운영 고도화 방안(행정연, 2024-96호)

□ 보고내용(요약)

○ (분석서 내실화) 규제영향분석서의 **표준형과 간이형 작성 항목의 차별화**가 **필요**하다는 의견 제시

- **중요규제 심사 가능성이 높은 규제**에 대한 보다 **심도있는 규제영향분석 필요**

○ (부처 분석역량 제고) 규제영향분석 품질제고를 위해 **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** 확대

○ (해외비교)**모든 신설·강화 규제**의 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국내와 달리 영국, 호주, 미국은 **주요규제 위주로 작성**

- (**영국**) 연평균('16~'20) **약 85건**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였으며 '23년도부터 규제영향분석 작성대상 기준을 상향*조정

  * 연간균등순기업비용 5백만 파운드 이상('18~)→ 1천만 파운드(169억원)이상('23~)

- (**호주**) **최근 5년간**('18~'22) **연평균 63건** 정도 작성

- (**미국**) 매년 제출되는 약2,200개의 규제 중 **약 70-100개 주요 규제** (연간 경제적 효과 1억 달러[1,300억원] 이상)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

○ (개선방안 제안) **▲간이형 영향분석서 작성항목 간소화 ▲표준형 영향분석서 작성 대상 축소** 등을 통해 **작성 부담을 완화**하고 표준형 위주로 **영향분석서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**

□ 논의사항

○ 규제영향분석으로 인한 **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**하는 방안 논의

- **규제영향분석 간이형 작성기준을 확대하기보다 중요규제 중심**으로 **분석역량을 집중**하는 것이 **규제품질제고를 위해 바람직**

□ 심의결과 : 원안대로 접수

2. (보고) 규제샌드박스 '23년 운영성과 및 '24년 주요 추진계획(국조실, 2023-97호)

□ **보고내용(요약)**

○ (**'23년 성과**) 신산업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대

- '19.1월 제도 시행 이후 **8개 분야**에서 누적 **1,139건 과제 승인** 및 **안전성이 입증**된 사업 **265건 규제개선**('23년말 기준)

- 조속한 실증개시와 법령정비 착수를 위한 **행정규제기본법 개정***('23.7)

  * ①접수후 특례심의위 상정기한(90일) 설정 ②부결과제에 대한 재심의 신청(60일) ③부가조건 변경 신청 ④법령 정비계획 수립·통보 의무 설정(60일) 등

- ICT·산업융합 등 기존 6개 분야에서 **모빌리티·순환경제 분야 추가 확대**

  * 모빌리티('23.10.19 시행), 순환경제('24.1월 시행)

○ (**'24년 계획**) **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진행중**인 사업에 대하여 **규제정비가 가능**한 경우 **선제적으로 발굴·정비 추진**

- 안전성·유효성 입증 가능한 사업은 정비 검토대상에 포함하고, 다수의 동일·유사 사업이 실증중인 경우 우선 고려

- **국조실·주관부처** 중심으로 **선제적 규제정비**가 필요한 **규제샌드박스 사업**을 **1차적으로 발굴** 후, **규제부처**는 **제도개선 가능여부 검토**

□ **논의사항**

○ 실증특례 종료 후 **임시허가 전환 과제** 등 **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**에 대하여 **속도감 있는 제도개선 추진** 필요

○ **신산업육성 지원**을 위한 **제도 취지를 고려**하여, **사업 개시·운영**에 **지장을 주는 과도한 부가조건**은 **완화**해야할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